

단기 인수규정

제 정 : 2001.12.27	21차개정 : 2009.10. 1
1차개정 : 2002. 5.28	22차개정 : 2010. 2.12
2차개정 : 2002. 9.17	23차개정 : 2010. 7. 6
3차개정 : 2003. 7.31	24차개정 : 2011. 1. 1
4차개정 : 2004.11. 8	25차개정 : 2011.10. 1
5차개정 : 2005. 1. 2	26차개정 : 2012. 4. 1
6차개정 : 2005. 3.31	27차개정 : 2013. 2.14
7차개정 : 2006. 2.27	28차개정 : 2013. 3.18
8차개정 : 2006. 8.30	29차개정 : 2014. 7. 1
9차개정 : 2006.11.24	30차개정 : 2015. 7.17
10차개정 : 2007. 6.29	31차개정 : 2017.12.22
11차개정 : 2007.10.10	32차개정 : 2018. 6. 1
12차개정 : 2007.12.14	33차개정 : 2018. 8.31
13차개정 : 2007.12.21	34차개정 : 2020. 2. 1
14차개정 : 2008. 2. 4	35차개정 : 2020. 8.13
15차개정 : 2008. 3.25	36차개정 : 2021. 3. 3
16차개정 : 2008. 7. 8	37차개정 : 2022.12. 7
17차개정 : 2008. 7.17	38차개정 : 2023. 2.14
18차개정 : 2009. 2. 5	39차개정 : 2023. 6.28
19차개정 : 2009. 4.13	40차개정 : 2023.12.12
20차개정 : 2009. 6.19	41차개정 : 2023.1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역보험 관계법규 및 업무방법서에 따른 단기성 무역보험 종목의 인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종목) 제1조의 단기성 무역보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보험 종목을 말한다.

1. 단기수출보험
2.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중소기업"이란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건별승낙"이란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건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개별특약"은 주로 실무적인 사항으로 개별인수건 또는 개별업체에 적용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특약을 말하며, "일반특약"은 불특정 다수에 적용하기로 하고 표준화하여 제정한 특약(이 규정에서 개별특약이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은 경우, 특약은 모두 일반 특약을 지칭합니다)을 말합니다.

- ⑤ 이 규정에서 "한도"란 인수한도나 보상한도를 말한다.
- ⑥ 이 규정에서 "OECD수출신용규율"이란 공적수출신용협약, 환경기준, 뇌물방지기준 등 우리나라 정부가 준수하기로 한 OECD관련 기준을 말한다.
- ⑦ 이 규정에서 "프론팅"이란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및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과 관련하여 해외지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현지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보험사가 해외지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신용등급평가) 보험(보증을 포함함)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사신용조사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제5조(한도의 책정) ① 무신용장 수출거래에 대한 한도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한다.
 ② 신용장 방식 등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도를 제한없이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요령에서 요건을 정하여 책정가능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한도 책정 우대)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신시장 개척거래 등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 책정 시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7조(한도 책정 제한 등)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신용도가 불량하거나 무역보험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경우, 국별인수방침 등에 따라 인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 책정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8조(한도의 재책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도를 책정하거나 제한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재책정할 수 있다.

제9조(표준향해일수) 단기성 무역보험종목에서의 "공사가 정한 표준향해일수"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OECD수출신용규율의 준수) 제2조제1호의 적용대상거래는 OECD의 뇌물방지기준 등 OECD수출신용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특약의 체결) 개별특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수담당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유효조건, 세부 행정절차 및 그 밖의 인수관련 경미한 사항 등은 보험한도 또는 보증한도 전결권자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이자보상 특약의 운영) 공사는 원활한 수출금융 지원을 위하여,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금융기관 앞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 보상하는 내용의 이자보상 특약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단기·중장기 종목의 종합 지원) 단기·중장기 종목 중 수개의 종목을 결합 또는 통합 등의 방식으로 종합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도관리는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단기수출보험

제1절 단기수출보험(선적전)

제14조(보험계약의 체결)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선적전)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단기수출보험(선적전) 증권을 수출자에게 발급한다.

제2절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1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제15조(적용대상거래)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약관」(이하 이 관에서는 "약관"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거래로 한다. 다만, 약관 제2조제1항제3호의 중계무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1. 물품의 명칭, 수량
2. 선적국 및 선적시기
3. 판매조건
4. 최종수입국

제1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수출자가 보험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인수한도를 책정하거나 해당 수출거래에 대해 건별승낙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관계의 성립) 수출자가 수출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수출일(수출신용보증(선적후)와 연계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출통지한 내용이 약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다만, 요령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18조(결제관행 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 약관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목과 관련하여 연속수출 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결제관행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제관행 인정기간이나, 소손해 면책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2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제19조(적용대상거래) ①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약관」(이하 이 관에서는 "약관"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거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외지사(이 항에서는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등을 말함)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부보대상 거래에 포함한다. 다만, 동 해외지사의 국산 원부자재 구매비율 또는 현지에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

로부터의 구매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계약자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생산법인이 동 판매법인으로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위탁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해외지사가 물품을 제작하여 동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제3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③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해외지사와 신규거래선 발굴, 제품생산물량의 결정 및 배분, 판매처의 지정 및 판매물량 결정 등 해외지사에 대한 종합적인 생산·판매전략과 관련한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협력계약을 제2항의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또는 “위탁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준용)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관계의 성립,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관 단기수출보험(선적후-포괄)

제21조(적용대상거래) ①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특약」(이하 이 관에서는 “포괄특약”이라 함)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국내산업보호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3호의 중계무역거래 대상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약 제1조제1항의 일반수출거래
2. 특약 제1조제2항의 가공무역거래
3. 특약 제1조제3항의 중계무역거래
4. 특약 제1조제4항의 재판매거래

② 제1항제4호의 재판매거래는 제19조(적용대상거래) 제2항 및 제3항의 거래를 포함한다.

③ 포괄특약 제1조제4항제3호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거래를 재판매거래의 부보대상거래에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포괄특약의 체결) ① 수출자가 포괄특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도, 수출실적 및 거래실적, 수출거래 조건 등 요령에서 정하는 포괄보험 이용자 요건을 심사하여 특약을 체결한다.

② 요령에서 정하는 포괄보험 이용자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출실적중 일부만을 부보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규모와 채권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의 평균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정부서 또는 특정거래 등을 기준으로 부보대상거래를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신규로 포괄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2. 기존 포괄보험 특약 체결업체가 포괄 미이용업체에 흡수합병되거나, 미이용업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제22조의2(프리미엄 포괄보험의 운영) 공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대하는 프리미엄 포괄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및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의 다목에 따른 결제관행 인정
2. 포괄특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제한의 예외 적용
3. 포괄특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부보율 적용

제23조(보험관계의 성립) 수출자가 수출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포괄특약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요령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24조(준용)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준포괄)

제25조(적용대상거래) ①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 준포괄보험 특약」(이하 이 관에서는 “준포괄특약”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수출계약상대방과의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특약 제1조제1항의 일반수출거래
2. 특약 제1조제2항의 가공무역거래
3. 특약 제1조제3항의 재판매거래

② 제1항제3호의 재판매거래는 제19조(적용대상거래) 제2항 및 제3항의 거래를 포함한다.

제26조(준포괄특약의 체결) ① 준포괄특약의 체결 상대방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② 수출자가 준포괄특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신용도, 수출실적 등 요령에서 정하는 준포괄보험 이용요건을 심사하여 준포괄특약을 체결한다.

제27조(보험관계의 성립) 수출자가 수출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준포괄특약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요령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28조(준용)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관의2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연간계약형)

제28조의2(적용대상거래) ①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연간계약형) 약관(이하 “연간계약형 약관”이라 함)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국내산업보호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3호의 중계무역거래 대상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간계약형 약관 제2조제1항의 일반수출거래

2. 연간계약형 약관 제2조제2항의 가공무역거래
3. 연간계약형 약관 제2조제3항의 중계무역거래
4. 연간계약형 약관 제2조제5항의 재판매거래

② 제1항제4호의 재판매거래는 제19조(적용대상거래) 제2항 및 제3항의 거래를 포함한다.

③ 연간계약형 약관 제2조제5항제3호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거래를 재판매 거래의 부보대상 거래에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의3(계약의 체결) ① 보험계약자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연간계약형)계약(이하 “연간계약형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자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수출거래실적 등 요령에서 정하는 연간계약형 보험계약 이용자 요건을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보험계약조건을 확정하면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표시로 연간계약형 약관 및 수출계약상대방별(재판매거래의 경우 재판매계약 상대방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보상한도가 첨부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보험계약 체결시 연간계약형 약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거래’를 별도로 부보대상거래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규모와 채권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인수담당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의 특정 거래 또는 특정 수출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의4(준용) ①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프리미엄 포괄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제22조의2를 준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5관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및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

제29조(적용대상거래) ①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약관」(이하 이 관에서는 “글로벌네트워크약관”이라 함) 제3조 및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 기본약관」(이하 이 관에서는 “글로벌네트워크모듈형약관”이라 함) 제3조에 규정된 거래로 한다.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의 경우 부보대상 물품 추가 모듈 체결 시에는 해당 모듈에 의한 거래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외지사(이하에서는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등을 말함)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부보대상거래에 포함한다. 다만, 동 해외지사의 국산 원부자재 구매비율 또는 현지에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로부터의 구매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계약자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생산법인이 동 판매법인으로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위탁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해외지사가 물품을 제작하여 동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제3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해외지사와 신규거래선 발굴, 제품생산물량의 결정 및 배분, 판매처의

지정 및 판매물량 결정 등 해외지사에 대한 종합적인 생산·판매전략과 관련한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협력계약을 제2항의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또는 “위탁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글로벌네트워크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 및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 기본약관 부보대상 물품 추가 모듈약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거래를 글로벌네트워크 보험 및 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의 부보대상 거래에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의 체결)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외지사별로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계약(이하 “글로벌네트워크보험계약”이라 함) 또는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모듈형 계약(이하 “글로벌네트워크모듈형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재판매거래실적 등 요령에서 정하는 글로벌네트워크보험계약 또는 글로벌네트워크모듈형보험계약 이용자 요건을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보험계약조건을 확정하면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표시로 글로벌네트워크약관 또는 글로벌네트워크모듈형약관과 재판매계약상대방별 보상한도가 첨부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의 해외지사별로 보험계약조건(적용대상 모듈포함)을 달리하거나, 특정 재판매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거나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험계약자의 해외지사별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의2(프론팅의 운영) ① 글로벌네트워크보험계약 또는 글로벌네트워크모듈형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해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프론팅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론팅 방식에서 적용할 약관은 현지보험사와 협의하여 글로벌네트워크약관 또는 글로벌네트워크모듈형약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절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제1관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제32조(적용대상거래)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약관(전자무역)」(이하 이 관에서는 “전자무역약관”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계약을 말한다.

제33조(보험계약의 체결) 수출자가 청약을 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심사(자동인수시스템을 말함)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후 온라인상으로 보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급한다.

제34조(보험관계의 성립) 수출자가 수출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전자무역약관 제16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요령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35조(준용) 결제관행의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관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신용카드결제방식포괄)

제36조(적용대상거래)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신용카드 결제방식 포괄보험특약(이하 이 관에서는 “신용카드특약”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 무역거래를 말한다.

제37조(신용카드특약의 체결) ① 신용카드특약은 특정 전자무역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전자무역 사이트를 통하여 신용카드 무역거래를 행하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다.

② 전자무역사이트 운영자가 신용카드특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무역사이트의 운영현황 등을 심사하여 신용카드특약을 체결한다.

제38조(인수한도의 책정 및 국별인수방침 적용배제) ① 신용카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수 한도 책정절차를 생략하고 신용카드 거래승인 금액을 인수한도로 한다.

② 신용카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국별인수방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절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제39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약관(구매자신용)」 제2조에 규정된 금융계약을 말한다

제40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금융기관이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후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증권 또는 보험승인서를 금융기관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인수한도를 책정한다

제41조(전대방식 종합지원 및 총액한도운영) ① 차주를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는 구매자신용 (“전대방식”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라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및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함께 종합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 지원하는 경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의 개별거래에 대한 청약 이전에도 해당 은행 앞 전대방식 총액한도를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인수한도의 책정 우대) 차주 또는 차주소재국의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신시장 개척거래 등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할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 책정시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제43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약관(포페이팅) 약관」 제2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의 포페이팅 거래를 말한다.

- 제4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금융기관이 보험청약을 한 경우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승낙 또는 건별승낙한다.
- ② 제1항의 자동승낙 또는 건별승낙한 건에 대해 금융기관이 포페이팅 거래 사실을 통지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 제45조(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운영)** ① 금융기관의 선택에 따라 개별보험 또는 포괄보험으로 운영한다.
- ② 개별보험은 금융기관이 포페이팅 거래를 선택적으로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괄보험은 요령에서 정한 자동승낙 대상거래 전체를 부보하기로 금융기관과 특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별 포페이팅 수출금융 현황을 고려하여 부보대상 거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절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제45조의2(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이하 이 절에서는 “약관”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수출거래를 말한다.

- 제45조의3(보험계약의 체결)** ①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을 청약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증권을 수출자에게 발급한다.
- ② 대금회수불능 담보를 위하여 신용장거래 또는 무신용장거래를 선택하여 부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무역클레임보험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담보위험별 책임금액한도는 「단기 인수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4(보험효력의 발생) 보험계약자가 약관 제11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약관 제9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절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제45조의5(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제2조에 규정된 수출거래를 말한다.

- 제45조6(보험계약의 체결)** ①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협회 등 공사가 인정하는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구성원인 수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발급하며, 그 세부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8절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

제46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약관(본지사금융)」 제2조에 규정된 수출거래를 말한다.

제4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인수한도를 책정한 후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기 이전에 수출자와 구상약정을 체결한다.

제48조(인수한도의 책정우대)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 또는 연관계약형 보험계약 체결업체로, S&P 또는 Moody's의 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이고, 한도책정대상 현지법인 소재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는 한도 책정 시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중소중견 특약) ① 중소기업의 본지사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 중소기업 특약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운영하는 경우 수출자별 최대책정가능한도는 U\$20백만으로 한다.

제9절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제1관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제49조(적용대상거래)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약관」(이하 이 관에서는 “약관”이라 함) 제2조에 규정된 수출거래를 말한다.

제50조(보험계약의 체결) 외국환은행이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사항을 심사하여 보상한도를 책정한 후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증권을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에 발급한다.

제51조(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계약자가 약관 제11조에 따라 매입내역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한다.

제2관 재판매

제51조의2(적용대상거래) ① 이 관의 적용대상거래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재판매특약」 제2조에 규정된 거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자의 해외지사(이 항에서는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등을 말함)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부보대상 거래에 포함한다. 다만, 동 수출자의 해외지사의 국산 원부자재 구매비율 또는 현지에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로부터의 구매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수출자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생산법인이 동 판매법인으로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수출자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위탁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동 해외지사가 물품을 제작하여 동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제3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③ 수출자가 자신의 해외지사와 신규거래선 발굴, 제품생산물량의 결정 및 배분, 판매처의 지정 및 판매물량 결정 등 해외지사에게 대한 종합적인 생산·판매전략과 관련한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협력계약을 제2항의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또는 “위탁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제10절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제52조(운영종목) 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은 대금미회수위험 및 수입국검역위험으로 구성된다.

② 대금미회수 위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국검역위험을 선택하여 부보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무역클레임보험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 <2011.10.1.>

제54조(보험계약의 체결)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청약한 경우에는 단기인수요령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증권을 수출자에게 발급한다.

제55조 삭제 <2011.10.1.>

제56조 삭제 <2011.10.1.>

제57조 삭제 <2011.10.1.>

제58조 삭제 <2011.10.1.>

제59조 삭제 <2011.10.1.>

제3장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제60조(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약관」 제2조에 규정된 수출거래를 말한다.

제61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사항을 심사하여 보상한도를 책정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제62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가 수출이행 내역을 통지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한다.

② POOLING특약에 따라 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제63조 삭제 <2011.10.1.>

제64조 삭제 <2011.10.1.>

제65조 삭제 <2011.10.1.>

제4장 수입보험

제1절 수입보험(수입자용)

제66조 삭제 <2018. 6. 1.>

제67조 삭제 <2018. 6. 1.>

제68조 삭제 <2018. 6. 1.>

제2절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제69조 삭제 <2018. 6. 1.>

제70조 삭제 <2018. 6. 1.>

제71조 삭제 <2018. 6. 1.>

제5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1절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72조 삭제 <2018. 8. 31.>

제73조 삭제 <2018. 8. 31>

제74조 삭제 <2018. 8. 31>

제75조 삭제 <2018. 8. 31>

제76조 삭제 <2018. 8. 31>

제77조 삭제 <2018. 8. 31>

제78조 삭제 <2018. 8. 31>

제2절 수출신용보증(Nego)

제79조 삭제 <2018. 8. 31>

제80조 삭제 <2018. 8. 31>

제81조 삭제 <2018. 8. 31>

제82조 삭제 <2018. 8. 31>

제83조 삭제 <2018. 8. 31>

제6장 보 칙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기인수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0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0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①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제22조(결제기간 사전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거 책정된 결제기간 사전 인정기간 및 소손해 면책금액은 이 규정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5)

이 규정은 200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이 규정은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6년 10월 31일까지의 선적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이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4절은 전산시스템구축 완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10절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이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 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단기인수요강”은 폐지한다.

부 칙 (1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한도 책정특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책정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한도를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한도로 전환할 경우,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용보증(Nego)의 "수출자별 총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부서장전결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17)

이 규정은 200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이 규정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이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이 규정은 201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5)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6)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7)

이 규정은 2013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8)

이 규정은 2013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9)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0)

이 규정은 2015년 7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1)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2)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3)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4)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5)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7)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8)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9)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0)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1)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전산시스템 구축 예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항해일수표

대륙별	지역별	국 별	표준항해일수
아 시 아	극 동 동남아시아	일본, 대만, 중국, 홍콩, 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팔라우	20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카니스탄, 네팔	30
	중 동	U.A.E, 요르단, 시리아, 바레인,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오만, 예멘	40
미 주	태평양연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온두라스	30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볼리비아	
	대서양연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기아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40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50
유 럽	지중해연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사이프러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40
	대서양연안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폴란드, 룩셈부르크	50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60
아프리카	지 중 해 인도양연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말라가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잠비아, 말라위, 우간다, 스와질란드	40
	대서양연안	모리타니아, 기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적도기니, 가봉, 앙골라, 말리,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차드	60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30

* 적용기준

1. 표준항해일수표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운송증권상의 최종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의 표준항해일수를 적용한다.
2. 주된 운송방식이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3. 국외에서 화물이 선적되는 위탁가공무역 또는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 별표 2 > 삭 제 <2018. 6. 1>